

보도 일시	2022. 1.28.(금) 조간 2022. 1.27.(목) 11:00	배포 일시	2021.1. 27.(목) 06:00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	책임자	팀 장 김영진 (044-200-5451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훈 (044-200-5452)

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보세요

- 2.7(월)~3.8(화), 각 시·군·구에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2월 7일(월)부터 3월 8일(화)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△수산자원보호 직불제, △조건불리 직불제, △경영이양 직불제, △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.

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(TAC)* 준수,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지난해 81개 단체 2,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하였고,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.

* Total Allowable Catch, 어종별·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

올해는 지난 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,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(TAC)을 준수하고, 자율적 휴어,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*에게 지급된다.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,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**을 받을 수 있다.

* TAC 참여 어선 10척 이상 또는 20척 이상의 연안 어선으로 구성

** 구간별 지급액 : (10톤 이하) 75만 원/톤, (10~20톤) 70만 원/톤, (20톤 초과) 65만 원/톤
(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, 30톤 어선의 경우 2,100만 원 수령 가능)

다만,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~40%를 감액하여 지급한다.

〈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〉

구 분		준수사항
수산자원 보호의무	기본의무	총허용어획량(TAC) 할당 및 준수 (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)
	선택의무 (가·나·다, 가·나, 가·다, 나·다 중 택일)	가. 일시적·자율적 조업중단 나. 해양쓰레기 수거 다. 그 밖의 의무(생분해성 어구 사용,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, 휴무일 지정, 그물코 크기 제한, 어종 채포 제한, 어구사용량 제한,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,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)
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		1. 연간 60일 이상 조업 2.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. 수산관계법령 준수 4.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.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

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어업인 단체는 2월 7일(월)부터 3월 8일(화)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시·군·구로 신청하면 된다. 자격요건,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·군·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(☎044-200-5452~3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,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,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.

* 직불금 신청(2월) → 지급대상 선정(3~5월) → 이행점검(6~11월) → 지급(12월)

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“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(TAC)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,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 1

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개요

□ (목적)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

□ (지원대상)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

□ (지급요건 등) 총허용어획량(TAC)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, 선택의 무*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

* 일시적·자율적 조업중단, 어선감척, 해양쓰레기 수거, 그밖의의무(생분해성 어구 사용,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)

□ (지원방식)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

○ (소규모어선직불)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, 소규모어가 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

○ (톤수비례직불)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, 단가는 톤당 65~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*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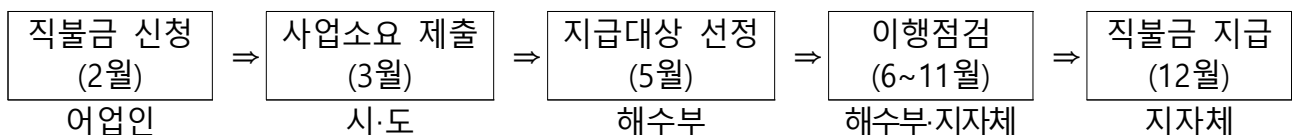
* 경영규모(톤수)가 커질수록 톤당 지급단가가 줄어드는 구조

구간	1구간 (10톤 이하)	2구간 (10~20톤)	3구간 (20톤 초과)
단가	75만원/톤	70만원/톤	65만원/톤

□ ('22년 소요예산) 11,934백만원

* 산출근거 : 연근해어선 1,467척 × 평균 지급단가 8백만원 × 국비100% + 행정비 1.7%

□ (사업추진절차)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, 이행점검 후에 직불금 지급



참고 2

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절차

① 사업 준비

해양수산부	- 사업시행지침 시달
지자체 (시군구, 시도)	▪ '22.1.1 ~ 2.4 - 사업시행지침 확인 -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 -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사업설명, 홍보 * 홈페이지, 게시판 공고, 반상회보 게재 등



② 신청·접수

지자체 (시군구)	- 직불금 신청 접수(2.7~3.8)
어업인 등	-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(2.7~3.8) *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군구 ** 구비서류 : 어업허가증,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



③ 사업자 선정

지자체 (시군구, 시도)	- 신청서류, 구비서류 검토 - 신청자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(~3.22) (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해양수산부)
해양수산부	-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적합성 검토 의뢰(~4.7)
국립수산물과학원	-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적합성 검토 및 검토 결과 해양수산부에 제출(~5.17)
해양수산부	- 지급대상자 선정(~5.31) *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(필요시 전문가그룹 사전검토) - 지급대상자 통보(~6.7) (해양수산부 → 시·도(어업관리단) → 시·군·구)



④ 이행점검

어업관리단	- 지급요건(기본의무, 선택의무) 준수 여부 등 상시 점검(6.7) 및 집중점검(10.1~10.31) - 점검결과 해양수산부, 시·도에 통보(~11.7)
-------	--



⑤ 자금배정 및 집행

지자체 (시군구, 시도)	-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, 해양수산부에 지급 예산 요청(~11.16) - 지급대상자에게 선정 여부 통보(~11.21) 및 보조금 지급(12월)
해양수산부	- 지자체별 예산 소요액 가내시(5.31) 및 변경내시(11.7) - 지자체별 소요예산 교부(~11.30)



⑥ 사업정산

해양수산부, 지자체	- 수령자 자료 관리 -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
---------------	--

참고 3

총허용어획량(TAC) 준수여부 검사 사진

